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〇〇 지방법원 20 년 금제 〇〇〇 호		
공탁금	일천만원 (금 1,000만원)		
공탁자	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피공탁자	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자는 20 . 00. 00. 00:00경 0000000000 에서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공탁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 한마디 없이 피공탁자 〇〇〇 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3. 공탁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돈 몇 푼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기에 피공탁자는 이 공탁금을 찾지 않겠습니다.
4. 아울러 공탁금 1,000만원은 가해자가 형사사건 종결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가해자가 찾아간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 될 것이어서 결국 가해자는 돈 한 푼 손해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없는 공탁금은 찾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기에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냅니다.

결국 공탁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싫고, 돈은 1원 한 푼 손해 보기 싫어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니 이 동의서를 토대로 공탁금 1,000만원을 회수하면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 20 〇 〇 년 〇 〇 월 〇 〇 일

- 피공탁자 〇 〇 〇 (인)

공탁자	〇 〇 〇	(수신)	〇 〇 시 〇 〇 구 〇 〇 길
피공탁자	〇 〇 〇	(발신)	〇 〇 시 〇 〇 구 〇 〇 길